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1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7년 11월 30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07. 5.11) 및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전부개정(2007.10. 4)에 따라 관련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규 조문번호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
-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계법규 인용조문 변경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를 제33조로,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변경함(안 제1조)

나. 월정수당 조정

- 월 1,830,000원에서 월 2,360,000원으로 조정함(안 제3조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5. 관계법령발취 : 별첨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3조
- 나.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공문사본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2조”를 “제33조”로, “제15조”를 “제33조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1,830,000원”을 “2,36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의 개정규정에 위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(이하 “의원이라 한다)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제33조.....제33조.....</p>
<p>제3조(월정수당)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<u>1,830,000원</u>으로 한다. 단,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3조(월정수당) ①.....<u>2,360,000원</u>..... ②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발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33조 (의원의 의정활동비 등) ①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.

1.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(保全)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
2. 본회의 의결,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
3.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

②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33조(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) ①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.

1. 의정활동비 : 별표 4에 따른 금액
2. 여비 :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
3. 월정수당 :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,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,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

②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